

군산시 공고 제2015 - 65호

공 고

우리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12일

군 산 시 장

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중 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사항과 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”로 변경
- 안 제9조(기능)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신설
- 제6호 : 주요사업 투자심사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(참조: 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

다. 의견 제출할 곳

- 우)573-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F
(☎ 063-454-2313, FAX:452-8157)

라. 의견 제출 방법
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마.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예산계(☎ 063-454-23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

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사항과 법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함을 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주요사업 투자심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